



# 강 남 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취득세 감면(현물출자)처리(\*\*\*\*\*)

주\*\*\*\*\*

\*\*\*\*\*

- 아 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485,054,600	4*	3,099,402,180	3,099,402,180	*	****
***** *****	3,099,402,180	***	619,880,430	*	619,880,430	
****			***** *	***** **	*****	

## 나.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제2항 :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총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요건 해당여부

- 주식회사 \*\*\*\*\* : 충족(평균매출액 및 업종)
- 출자자 \*\*\* : 충족(개인사업자 중소기업 해당\_중소기업청 해석)

\*\*\*\*\*소비성서비스업 해당여부

- 주식회사 \*\*\*\*\* : 해당없음(부동산임대업 및 광고업)
- 출자자 \*\*\* : 해당없음(부동산임대업)

\*\*\*\*\*순자산가액 및 주식가액 요건 충족여부(주식가액이 순자산가액과 동일)

-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 \*\*\*\*\*
- 발행주식가액 : \*\*\*\*\*
- 단주처리 : 1,770원(조심2012지0285)

